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02회 임시회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의안번호 제2595호)

## 제안설명



2021. 09. 07.

서울특별시 의원 오 중 석  
(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)

○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오중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번 조례안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

자치구의 참여와 협의 권한을 강화하고

회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○ 현행 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,

자치구 관련 사항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출석과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,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.

○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

시민들이 도시계획 심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

○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

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안건 소관 구청장이 참석을 원할 경우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

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자치구의 참여를 독려하고 협의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.

○ 더불어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